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2가단12207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승용

피고 1. A

소송대리인 B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조영수

변론 종결 2022. 11. 30.

판결 선고 2023. 1. 11.

주 문

1. 주식회사 D와, 피고 A 사이에 2019. 6. 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 중 3,200,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과 피고 C 사이에 2019. 6. 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 중 8,585,500원에 관하여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각 취소한다.
2. 가. 피고 A은 주식회사 D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공탁금출급청구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위 공탁금출급청구채권을 주식회사 D에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 나. 피고 C은 주식회사 D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공탁금출급청구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위 공탁금출급청구채권을 주식회사 D에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 보증 등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를 신용보증하였다.

1	2011. 4. 25.	80,000,000원	2012. 4. 20. (2020. 4. 15.)	중소기업자금대출	2011. 4. 25.	100,000,000원
---	--------------	-------------	-----------------------------	----------	--------------	--------------

3) D는 피고 C에게 액면가 8,585,500원, 만기 2019. 5. 31.인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주었으나, 2019. 5. 31.경 예금 부족을 이유로 당좌거래가 정지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20. 4. 8. 중소기업은행에 82,813,38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원고는 D와 연대보증인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차전6793호로 '대위변제금 및 법적절차비용 합계 83,068,421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82,813,385원에 대하여 2020. 4. 8.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8%,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21. 6. 21.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21. 9. 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D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양도 등

- 1) D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별지 채권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 2) D는, 2019. 6. 3. 피고 C에게 이 사건 채권 중 8,585,500원을 양도하였고, 2019. 6. 4. 피고 A에게 이 사건 채권 중 3,200,000원을 양도하였으며, 각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2019. 6. 5. 내지 2019. 6. 7. F에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채권양도'라고 한다).
- 3) F는 2020. 3. 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년 금 제1139호로 피고들과 D를 피공탁자로 하여, '채권양도통지서, 채권가압류 등이 공탁자에게 송달되었는바, 채권양도통지서가 불명확하여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가압류 경합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채권액 22,755,163원(= 2,315,328원 + 판결금 원금 19,500,000원 + 2019. 7. 9.부터 2020. 2. 7.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648,098원 + 2020. 2. 8.부터 2020. 3. 18.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55,737원)을 혼합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

다. D의 채무초과 상태

이 사건 각 채권양도일 무렵 D는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채권과 (차량번호 1 생략) 차량(2013년식 모닝, 신차 가격 15,400,000원), (차량번호 2 생략) 차량(2012년식 i30, 신차 가격 22,050,000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앞서 본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1억 원을 포함하여 여러 채무1)가 있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채무초과상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3, 4호증, 을나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기초 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1. 4. 25. D의 대출채무를 신용보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채권양도일인 2019. 6. 3., 2019. 6. 4. 당시 이미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던 점, ② D는 이 사건 각 채권양도일 무렵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채권양도일 당시 이미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위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이 사건 각 채권양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D의 채무초과 상태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채권양도일 무렵 D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채무초과상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가지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채무자와 수익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81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기초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이 D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기초하여 D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이나 용역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채권양도를 위 물품대금채무 또는 용역대금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로 볼 수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각 채권양도 당시 D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채권 외에 차량 2대가 있었기는 하나, 그 가액이 적고, 환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채권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재산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각 채권양도 이후 이 사건 채권액은 11,785,500원만이 남은 점, ④ 이 사건 각 채권양도 직전인 2019. 5. 31.경 예금 부족을 이유로 당좌거래가 정지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결국 원고가 대위변제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채무자 D와 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D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채권의 일부씩을 각 양도한 것은 D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채무자 D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 가)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이와 달리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사실은 수익자 스스로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44472 판결 참조).

나) 위 인정 사실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인 D는 이 사건 각 채권양도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D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 A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고 피고 A이 선의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A은 2019. 5. 11. D에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여

주었음에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채권의 일부 금액만이라도 미리 결제해달라고 요청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를 받았다는 것인바, 피고 A은 D가 변제 자력이 부족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A의 선의의 수익자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하여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을 집행공탁한 경우 비록 제3채무자의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제3채무자의 채권자는 현실적으로 채권을 추심한 것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압류의 효력이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금전지급에 의한 가액배상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939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이 사건 각 채권양도는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사해행위의 수익자들이자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피공탁자들인 피고들이 아직 공탁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채권양도에 기초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D에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민

별지

1)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만으로도 1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포함하여 총 378,911,007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다(갑 제1호증의 2).